



참깨두부 레시피의 영업비밀 해당성 및 부정취득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항소심 사건

36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오사카고등법원	사건번호	평성18년(네) 제2431호
판결 일자	2007. 10. 18.	판결 결과	원고 일부 승소
원고 (항소인)	도쿠시마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아유야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4호, 2조 1항 5호, 민법 719조		
영업 비밀	참깨두부 레시피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부정경쟁, 불법행위		

02 사건 개요

원고는 식품회사로서 원심 피고 C가 근무하였던 곳이다. 원고는 원심에서 피고 C가 몰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거래처를 빼앗았다고 보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더불어, 영업비밀인 참깨두부 레시피를 무단 반출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피고 B와 C에게 제기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항소하여 본 재판이 진행되었다.

03 주요 쟁점

원 고 (항소인)

종업원이던 피고 C가 몰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거래처를 빼돌렸으며, 업무 과정에서 원고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원심 피고들은 원고의 영업비밀인 참깨두부 레시피를 무단 반출하여 부당한 경쟁을 하였다.



피 고 (피항소인)

원고가 제조하는 참깨두부는 피고에게도 중요한 제품이며, 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거래를 미루지 않았다.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다.

04 판결 요지

원고는 피고 사이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끝났거나 또는 적어도 급격히 악화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변화했음에도, 피고는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나 의사가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항소인이 제조하는 참깨두부는 피고에게도 중요한 제품이며, 백화점 납품 확보에 대해서 피고도 신경 쓰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발주 방해를 도출하기 어려운 점, 피고도 나름대로 확대 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있던 것이 보임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상호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하기는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통해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해당 인과관계를 부정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나, 영업비밀에 관하여는 원심 피고의 인락이 존재하는 바, 금원지급을 명한다.

05 Key Point

종업원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다거나 태만한 근로 등의 이유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도와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